

#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재분배와 빈곤완화 효과

— 고용·가족구성·세대효과를 중심으로 —

반정호\*

## I. 머리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는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가계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노동부(2009)가 발표한 임금동향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체 전체 임금근로자(2009년 1/4분기 기준)의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이 동시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이 2009년 2월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2008년 4/4분기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와 전국가구의 실질소득도 모두 하락했다. 특히 2008년 전국가구(1인 이상)의 시장소득 지니계수(0.348)와 상대빈곤율(18.1%)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분배지표와 빈곤지표가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최근의 경기침체와 고용사정 악화가 단기적으로 회복되기 힘든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분배(빈곤)지표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 고용안전망 구축 등의 포괄적인 고용정책은 물론 소득불평등 완화 및 빈곤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의 다차원적인 소득보장정책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인 듯하다. 물론 국가의 물리적 재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 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재분배정책은 소득불평등과 빈곤위험에 노출이 심한 집단이나 계층을 표적화(targeting)하고 이들에 대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이나 가구의 특성별로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수준과 재분배 및 빈곤완화 효과 정도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계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jhban@kli.re.kr).

층별 소득재분배와 빈곤완화 효과 정도를 아는 것은 정책대상 선정과 지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구특성을 (가구주) 고용상태, 가족구성, 세대구성의 세 차원으로 분리하여 소득불평등과 빈곤정도를 파악하고, 아울러 가구의 각 차원을 고려하여 사적이전과 공적이전의 재분배 및 빈곤감소 효과를 탐색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즉,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이질적인 가구구성이 어떠한 경제적 불평등과 빈곤의 결과로 나타나며, 공·사 각각의 영역에서 소득재분배와 빈곤감소 효과가 어떤 계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I. 분석방법

본고는 비교적 최근의 소득분배 현황과 불평등 정도를 개인과 가구의 특성에 기초하여 파악하고, 이러한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재분배 및 빈곤감소 효과를 파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 고려하는 개인과 가구의 특성은 (가구주) 고용상태와 가족구성, 그리고 세대구성의 세 차원이다. 개인이나 가구원의 고용상태와 불평등(혹은 빈곤)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많은 기존연구들에서 이미 실증된 바 있다. 취업여부는 물론 취업의 질이 경제적 불평등 및 빈곤지위와는 높은 상관성이 존재하며, 탈빈곤의 효과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소득변수가 가구주나 가구원의 근로소득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가구의 경제적 책임을 지고 있는 가구주의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소득불평등과 빈곤의 정도를 파악한다.<sup>1)</sup>

다음으로 고려하는 것은 가구의 가족구성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에는 노인가구(老人家口), 모자가구(母子家口), 맞벌이가구, 기타가구로 이루어진다. 노인가구는 가구주와 그 배우자 모두 65세 이상인 노인부부가구를 말하며, 노인가구주(65세 이상인 노인) 또는 노인부부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손자, 손녀 등이 같이 생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모자가구는 가구주인 모친과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맞벌이가구

1) 통계청 「가계조사」에서 가구주라 함은, 호적상의 호주나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또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주로 조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가계지출의 의사결정자와는 다르다.

는 같이 사는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 취업한 가구를 의미하며, 배우자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취업자수에는 포함하나 맞벌이가구에서는 제외한다. 또한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배우자가 취업한 경우는 맞벌이가구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타가구는 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가구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특성을 분리하기 위해 고려하는 것이 가구의 세대구성 차원이다. 즉, 한 가구가 1세대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2세대 혹은 그 이상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sup>2)</sup>

본고에서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sup>3)</sup>를 활용하였고, 빈곤율 계산을 위해서는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선을 이용하여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을 각각 계산했다.<sup>4)</sup> 또한 가구의 규모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가구별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주는 균등화 척도를 사용했으며, 가구기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하는 방식의 개인가중치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되는 소득별 주별 금액이나 분포는 공식적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수치와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자료에서 소득관련 구성과 범주가 <표 1>과 같이 정의된다. 총소득은 가구의 경상소득과 경조소득이나 퇴직금 등의 비경상소득을 합한 금액이며, 경상소득은 가구주와 배우자 및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계한 금액을 의미한다. 시장소득은 가구의 경상소득에서 공적연금 및 기타 사회보장수혜금액 등의 공적 이전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직접세와 사회보장부담금(공적연금 및 기타 사회보험 납부액)을 차감한 것이다. 일차소득(시장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차감한 금액)과 시장소득의 비교를 통해 사적이전의 재분배(및 빈곤감소) 효과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을 이용한 분배 지표의 비교를 통해 정부의 공적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경상소득과

- 2) 최근 핵가족화, 동거 경향의 약화 등 세대관계의 다양화가 빠르게 진행된 상황에서 기존의 세대간 지원기능과 가족부양 책임이 완화되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세대간 지원의 효과 및 가족중심 부양관이 우리 사회에서 유효하다는 주장이 상반된다(Parsons and Bales, 1955; Palmore, 1975; Brown, 1988; Bumpass, 1990; 박경숙, 2003). 흔히들 우리나라는 사적이전의 재분배와 빈곤감소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사적이전이란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받는 비공식적인 금전적·비금전적 지원을 통칭하는 것으로 그만큼 우리 사회는 세대간 지원관계가 활발함을 뜻한다. 여기에서는 세대간 동거가 자원의 세대간 이동과 지원이라는 연대의 지표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지 혹은 독립공간에서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사회이동의 기회가 적은 계층이 세대간 동거를 선택하는 일종의 빈곤지표로 인식되는 것이 적절할지를 평가해 본다(Shanas, 1980; Litwak, 1985).
- 3) 지니계수를 비롯한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다른 지표들에 대해서는 반정호(2008)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 4) 절대빈곤율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단 8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가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8인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6인 가구와 7인 가구의 차액을 가구원 1인이 증가할 때마다 일률적으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생계비를 산출하고 그 이하의 가구비중을 절대빈곤율로 정의하였다.

<표 1> 가계조사의 소득구성과 범주

자산유형		구성내역	
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의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기타 재산소득
		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타 사회보장 수혜), 사적이전소득
	비경상소득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기타 비경상소득	
총소득		경상소득+비경상소득	
일차소득		시장소득-사적이전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사업 및 부업소득+재산소득+공·사적이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공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		경상소득-(직접세+사회보장부담금)	

가처분소득의 분배지표의 비교를 통해서서는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 III. 분석결과

#### 1. 가구유형별 소득불평등도 비교

<표 2>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가구의 고용·가족구성·세대구성의 특성에 따라 소득불평등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고용형태별로는 상용노무직(기능직 포함) 가구의 지니계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임시일용직의 경우는 2006년 0.325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가 2008년 현재 0.309까지 낮아졌다. 사무직(공무원 포함)의 경우는 2006년까지 큰 변화없이 등락을 거듭해오다가 2008년 0.275로 소폭 증가했다. 가족구성별로는 기타가구와 맞벌이가구의 경우, 지니계수가 각각 0.270과 0.300 전후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노인가구는 2003년 0.371이었던 지니계수가 2007년까지 0.336까지 하락해 분배완화가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2008년 현재 0.380으로 2003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모자가구의 경우는 2003년 0.387에서 2005년 0.400까지 증가했고, 2008년 현재는 0.382까지 지니계수가 하락했다. 세대구성별로는 1세대로만 구성된 가구의 지니계수(0.352, 2008년 기준)가 2세대와 3세대 이상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시에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

<표 2> 가구특성별 소득불평등 추이 : 개별차원(2003~08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도시 근로자 가구	사무직	0.270	0.272	0.268	0.271	0.275	0.275
	상용노무직	0.262	0.266	0.283	0.278	0.283	0.285
	임시일용직	0.301	0.295	0.308	0.325	0.319	0.309
	노인가구	0.371	0.342	0.349	0.326	0.336	0.380
	모자가구	0.387	0.381	0.400	0.373	0.363	0.382
	맞벌이가구	0.266	0.270	0.275	0.274	0.276	0.271
	기타가구	0.300	0.308	0.302	0.302	0.305	0.307
	1세대	0.345	0.341	0.349	0.352	0.357	0.352
	2세대	0.291	0.297	0.296	0.297	0.299	0.301
	3-4세대	0.306	0.309	0.313	0.281	0.301	0.297
전국 가구	사무직	0.273	0.272	0.269	0.271	0.274	0.274
	상용노무직	0.269	0.270	0.290	0.282	0.283	0.288
	임시일용직	0.309	0.304	0.320	0.329	0.325	0.319
	근로자의 가구	0.379	0.377	0.382	0.393	0.397	0.402
	노인가구	0.597	0.556	0.523	0.520	0.527	0.555
	모자가구	0.390	0.382	0.406	0.419	0.383	0.373
	맞벌이가구	0.267	0.269	0.273	0.273	0.277	0.276
	기타가구	0.340	0.345	0.345	0.348	0.348	0.350
	1세대	0.472	0.464	0.472	0.470	0.480	0.487
	2세대	0.319	0.320	0.322	0.326	0.326	0.327
3-4세대	0.328	0.335	0.337	0.326	0.342	0.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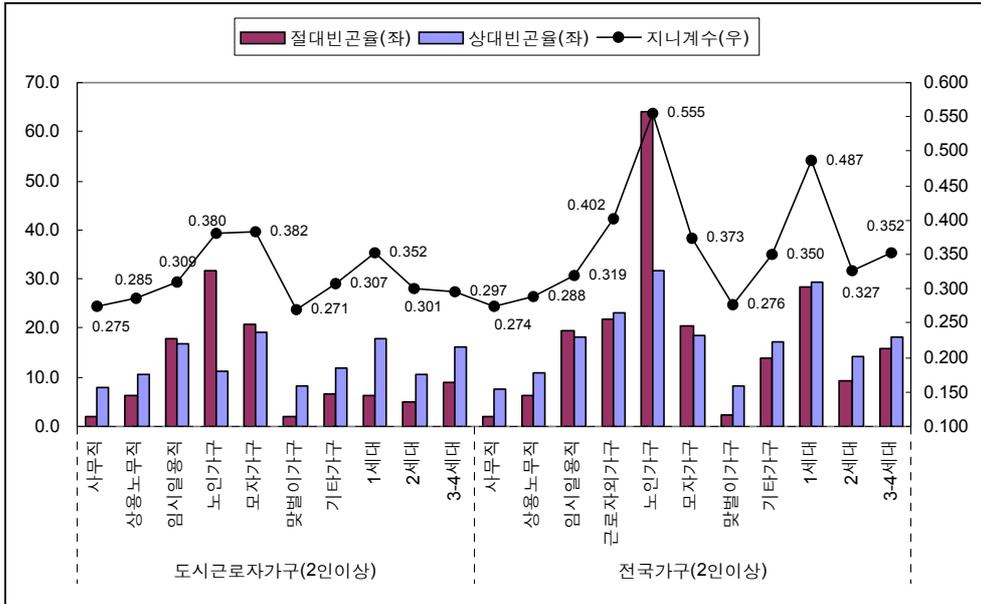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는 추세가 확인된다.

가구특성을 나타내는 각 차원을 전국가구로 확장해 지니계수를 비교하면, 사무직, 상용노무직,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가구 순으로 지니계수가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근로자의 가구의 지니계수 증가추세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가족구성과 세대구성의 차원에서 소득불평등도를 비교하면, 노인가구와 1세대가구의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전국가구에서는 도시근로자가구와는 다르게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의 지니계수가 2세대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차원의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를 통해서는 대략적으로 가구주의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취업하지 않은 가구, 노인과 모자로 구성된 가구, 1세대 가구에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표 3>은 (가구주) 고용과 가족구성의 두 차원을 결합하여 소득불평등도를 비교한 것이다.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화된 가구는 가구주가 임

[그림 1] 가구특성별 지니계수 및 빈곤을 비교(2008년 기준)



시일용직에 종사하면서 모자가구인 경우로, 이들 가구의 지니계수는 0.406을 기록하고 있어 타가구에 비해 높다. 반면 소득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가구는 사무직+노인가구(0.239)와 상용노무직+맞벌이가구(0.240)이다. 즉, 여성가장이면서 임시일용직의 형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에서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가구의 경우는 근로자와+노인가구(0.581)에서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로자와+기타가구(0.384), 상용노무직+노인가구(0.378), 근로자와+모자가구(0.374)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5)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가족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가구주의 고용이 상이함에 따라 소득 불평등도가 달라짐이 확인된다. 예컨대, 도시근로자가구에서 모자가구의 지니계수는 0.382였던 것이 가구주의 고용형태가 임시일용직일 경우 0.406으로 0.024p(gini포인트) 증가한다. 또한 전국가구의 경우, 가족구성의 차원만 고려한 노인가구의 지니계수(0.555)가 가구주의 고용형태를 고려하면 근로자와+노인가구의 지니계수는 0.581(0.026gini포인트)까지 증가한다는 것이다.

5) 본고에서 정의된 기타가구는 노인·모자·맞벌이가구로 정의된 이외의 모든 가구를 포함하고 있고, 근로자와 가구는 자영자가구와 무직자가구를 포함한다. 이처럼 가구의 가족구성과 고용특성에 따른 가구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기타가구와 근로자와 가구는 매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집단이 동일유형으로 분류된 것이므로 이들 가구의 불평등과 빈곤지표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표 3> 가구특성별 소득불평등 추이 : 복합자원(2003~08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도 시 근 로 자 가 구	사무직	노인가구	0.122	0.219	0.133	0.203	0.318	0.239
		모자가구	0.278	0.282	0.328	0.292	0.355	0.316
		맞벌이가구	0.253	0.250	0.238	0.239	0.242	0.241
		기타가구	0.263	0.266	0.261	0.270	0.270	0.275
	상용노무직	노인가구	0.227	0.276	0.354	0.343	0.246	0.351
		모자가구	0.316	0.310	0.329	0.299	0.313	0.372
		맞벌이가구	0.220	0.220	0.236	0.241	0.244	0.240
		기타가구	0.277	0.290	0.297	0.283	0.290	0.292
	임시일용직	노인가구	0.381	0.353	0.310	0.255	0.322	0.311
		모자가구	0.353	0.301	0.347	0.364	0.368	0.406
		맞벌이가구	0.217	0.227	0.240	0.266	0.254	0.241
		기타가구	0.314	0.309	0.326	0.340	0.334	0.320
전 국 가 구	사무직	노인가구	0.122	0.284	0.172	0.203	0.317	0.259
		모자가구	0.284	0.302	0.329	0.305	0.359	0.327
		맞벌이가구	0.255	0.251	0.238	0.242	0.242	0.241
		기타가구	0.265	0.266	0.262	0.269	0.268	0.273
	상용노무직	노인가구	0.217	0.297	0.332	0.325	0.261	0.378
		모자가구	0.294	0.300	0.331	0.317	0.318	0.363
		맞벌이가구	0.227	0.225	0.243	0.239	0.244	0.239
		기타가구	0.281	0.290	0.299	0.289	0.289	0.297
	임시일용직	노인가구	0.431	0.376	0.346	0.302	0.327	0.367
		모자가구	0.354	0.308	0.372	0.389	0.369	0.367
		맞벌이가구	0.224	0.232	0.254	0.269	0.254	0.240
		기타가구	0.319	0.316	0.332	0.340	0.338	0.326
	근로자외 가구	노인가구	0.622	0.585	0.547	0.551	0.560	0.581
		모자가구	0.389	0.385	0.396	0.433	0.405	0.374
		맞벌이가구	0.255	0.255	0.253	0.264	0.274	0.289
		기타가구	0.382	0.386	0.392	0.398	0.394	0.394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 2. 가구유형별 절대적·상대적 빈곤정도 비교

지금까지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를 통해 가구의 특성별로 소득분배 상태를 파악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개인이나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정도를 보다 잘 드러내주는 빈곤지표를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표 4>는 가구의 고용·가족구

<표 4> 가구특성별 절대빈곤율 추이 : 개별차원(2003~08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도시 근로자 가구	사무직	2.0	2.3	2.1	2.0	2.1	1.9
	상용노무직	4.7	3.4	7.3	7.2	6.2	6.2
	임시일용직	16.2	14.8	19.9	18.7	17.9	21.2
	노인가구	42.6	32.2	40.0	43.6	31.8	38.5
	모자가구	18.9	15.8	23.0	23.3	20.8	22.8
	맞벌이가구	2.1	2.0	2.6	2.3	1.9	1.7
	기타가구	7.2	7.5	8.1	7.3	6.7	7.0
	1세대	7.6	6.0	7.2	6.7	6.4	6.6
	2세대	5.4	5.5	6.3	5.9	5.0	5.2
3-4세대	8.3	8.2	10.1	7.7	9.0	8.8	
전국 가구	사무직	2.2	2.2	2.1	2.0	2.1	1.8
	상용노무직	5.2	3.7	7.8	7.4	6.1	6.8
	임시일용직	17.8	16.7	21.4	20.2	19.6	23.7
	근로자의 가구	18.8	18.6	20.3	21.2	21.8	22.6
	노인가구	68.9	62.9	60.7	63.0	64.2	66.3
	모자가구	20.5	18.9	23.7	23.1	20.6	19.9
	맞벌이가구	2.1	2.3	3.0	2.5	2.3	2.0
	기타가구	13.4	13.5	14.5	14.4	13.9	14.8
	1세대	25.8	24.4	26.4	27.2	28.3	29.9
2세대	9.6	9.5	10.5	9.9	9.4	9.7	
3-4세대	13.0	13.5	14.5	15.6	15.9	16.9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성·세대구성의 개별적인 차원에서 절대빈곤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5>는 상대빈곤율을 보여준다. 우선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주) 고용형태별 절대빈곤율은 사무직 가구에서 2%대로 가장 낮고 상용노무직 가구에서 6~7%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2003년 16.2%에서 2008년 현재 21.2%까지 절대빈곤율이 증가했다. 이는 2008년 기준 사무직 가구(1.9%)와 상용노무직 가구(6.2%)의 빈곤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또한 가족구성의 차원을 고려하면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이 30%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고 모자가구가 20% 초반까지 증가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맞벌이가구나 기타가구는 각각 1% 후반과 7%대의 절대빈곤율을 보인다. 세대구성의 차원을 고려했을 때는 3-4세대로 구성된 가구에서 빈곤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5> 가구특성별 상대빈곤율 추이 : 개별차원(2003~08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도시 근로자 가구	사무직	7.3	8.1	8.4	8.4	8.0	7.8
	상용노무직	8.8	8.4	11.5	11.3	10.5	10.7
	임시일용직	15.7	15.0	16.7	15.9	15.9	16.9
	노인가구	22.1	15.7	8.9	3.2	9.3	11.2
	모자가구	13.8	14.2	16.3	14.1	15.5	19.0
	맞벌이가구	6.7	7.1	9.1	8.8	8.5	8.3
	기타가구	11.7	12.6	12.3	12.0	12.2	11.9
	1세대	18.6	18.1	18.8	17.3	19.5	17.7
	2세대	10.3	11.4	11.4	11.7	11.4	10.7
	3-4세대	13.0	14.1	14.5	11.5	14.8	16.3
전국 가구	사무직	7.8	8.6	8.3	8.3	7.9	7.7
	상용노무직	8.8	8.8	11.5	11.5	10.4	10.9
	임시일용직	16.3	16.1	17.6	16.9	16.8	18.2
	근로자의 가구	20.4	21.4	22.4	23.3	23.3	23.1
	노인가구	33.3	32.1	30.4	28.9	29.7	31.6
	모자가구	19.9	18.0	19.6	21.0	17.6	18.3
	맞벌이가구	7.1	7.7	8.8	8.4	8.8	8.2
	기타가구	15.9	17.0	17.4	17.5	17.3	17.1
	1세대	29.0	28.2	28.9	28.3	29.1	29.3
	2세대	14.0	14.5	14.7	14.8	14.8	14.3
3-4세대	15.2	17.4	16.9	17.9	17.5	18.3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2인 이상 전국가구로 확대해 보면, 임시일용직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2008년 기준 23.7%로 도시근로자가구에 비해 빈곤율이 다소 높아지고, 자영가구나 무직자가구로 구성되는 근로자의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22.6%로 나타난다. 가족구성의 차원에서 보면, 전국가구에서는 노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역시 심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2003년 68.9%에서 2005년 60.7%까지 하락하지만 이후 다시 증가해 2008년 현재 66.3%를 기록하고 있다. 즉, 노인가구의 약 70%에 달하는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가구인 것으로 분석되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모자가구의 빈곤율도 20%대를 기록하고 있어 빈곤의 여성화 현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세대구성의 차원을 살펴보면, 전국가구에서는 1세대 가구의 절대빈곤율이 30%대에 이르고 있고, 3-4세대 가구 또한 17%대의 높은 빈곤율을 기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2세대로 구성된 가구의 빈곤율(9.7%)보다 2~3배 높은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1세대로만 구성된 가구와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표 1>에서는 (가구주) 고용과 가족구성의 두 차원을 결합한 절대빈곤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는 임시일용직+노인가구와 임시일용직+모자가구의 절대빈곤율이 각각 61.4%와 54.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가구주의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가족구성이 노동시장 진입에 취약한 가구원으로 구성될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의 가구주가 상용노무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절대빈곤율이 임시일용직 가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지만 여전히 29.2%와 26.4%라는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어 근로를 통한 소득활동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이들 가구의 가구주는 대부분 인적자본이 열악하여 취업의 질도 낮은 저임노동시장에 진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18세 미만의 요보호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근로소득을 높이는 데도 한계를 가진 집단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가구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차원의 경제적 지원 및 요보호가구원에 대한 서비스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는 가구특성에 따른 시장소득 기준 상대빈곤율 수준과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세 가지 차원들 중에서 고용과 세대구성에서의 상대적 빈곤율은 앞서 <표 4>에서 살펴본 절대빈곤율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흔히 상대빈곤율은 절대빈곤율보다 그 수치가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모자가구와 노인가구에서는 오히려 상대빈곤율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는 앞서 지니계수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의 소득분포가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며, 특히 이들 가구 중에는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가구들이 많아 소득분포가 좌측으로 치우치는 경향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 이해된다.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임시일용직 가구의 상대빈곤율이 2008년 현재 16.9%로 사무직(7.8%)과 상용노무직 가구(10.7%)에 비해 각각 9.1%p, 6.2%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세대 가구의 상대빈곤율이 17.7%로 2003년 이후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고 3-4세대 가구의 빈곤율은 2003년에 비해 3.3%p 증가한 16.3%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가구의 경우에는 임시일용직을 비롯하여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근로자의 가구의 상대빈곤율(23.1%)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족구성 차원에서는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이 31.6%로 맞벌이가구(8.2%)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세대구성의 차원에서도 1세대 가구의 상대빈곤율(29.3%)은 2세대 가구(14.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 3. 가구유형별 재분배 및 빈곤감소 효과 비교

여기에서는 가구의 고용·가족구성·세대구성의 각 차원이 반영된 가구유형별로 소득재분배와 빈곤감소 효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가구유형과 차원에서 불평등과 빈곤감소가 가장 크게 일어나는지를 탐색적으로 파악한다. <표 6>은 2008년 현재 도시근로자가구의 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재분배 및 빈곤감소 효과를 가구유형별로 비교해 놓은 것이다. 여기에서 사적이전의 효과는 일차소득(시장소득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차감한 소득) 지니계수(및 빈곤율) 대비 시장소득 지니계수(및 빈곤율)의 감소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적이전의 효과는 시장소득 지니계수 대비 경상소득 지니계수의 감소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지표는 공·사이전소득에 따른 지니계수나 빈곤율의 직접적인 감소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으로 노인가구와 모자가구에서는 사적이전의 재분배 및 빈곤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난 반면, 맞벌이가구와 기타가구에서는 사적이전보다 공적이전의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노인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의 재분배 효과는 13.0%p로 나타났고 공적이전은 오히려 소득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가구에서 공적연금이나 공적보조금의 수혜여부와 규모가 매우 이질적이라는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08년부터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의 완전노령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근로생애 동안의 연금가입여부와 기여금액에 따라 연금수급액은 노인가구에서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노인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소득불평등은 더욱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노인+1세대 가구인 노인부부세대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가구에 대한 공적이전의 재분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요구되는데, 2008년 1월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노인가구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일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 제도는 수급자격의 제한 완화 및 급여액의 현실화를 통해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강화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노인가구의 절대빈곤 및 상대빈곤 완화 효과는 공적이전보다 사적이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세대차원과 결합하여 살펴보면, 노인가구이면서 1세대로 구성된, 즉 노인부부세대는 사적이전의 발생이 상대적 빈곤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세대를 같이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받는 지원 규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결과로 이해된다.

공적이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집단은 모자가구로 나타났는데, 모자가구의 경우 사적이전의 재분배 효과는 0.8%p로 미약했으나, 공적이전은 소득불평등도를 9.6% 추가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절대빈곤의 경우는 사적이전이 46.0%p 빈곤감소 효과를 보이고 공적이전은 추가적으로 절대빈곤을

<표 6>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의 가구특성별 재분배 및 빈곤감소 효과 비교(2008년 기준)

(단위: %p)

	재분배 효과			절대빈곤 감소 효과			상대빈곤 감소 효과		
	사적 이전	공적 이전	총효과	사적 이전	공적 이전	총효과	사적 이전	공적 이전	총효과
노인가구	13.0	-4.3	8.7	25.5	16.5	41.9	43.4	14.8	58.2
노인+1세대	9.4	-5.0	4.4	24.8	15.2	39.9	-15.4	37.5	22.1
노인+2세대	6.5	8.1	14.6	27.0	19.3	46.3	49.4	24.3	73.7
모자가구	0.8	9.6	10.4	46.0	25.2	71.2	-54.7	69.2	14.5
맞벌이가구	0.7	1.8	2.5	7.1	25.8	33.0	3.8	12.0	15.9
맞벌이+1세대	1.3	2.4	3.7	16.8	4.8	21.6	10.7	10.5	21.3
맞벌이+2세대	0.5	1.8	2.3	4.8	31.4	36.2	3.8	15.0	18.8
맞벌이+3-4세대	1.2	1.4	2.7	19.6	2.5	22.2	3.9	1.9	5.8
기타가구	2.5	2.6	5.1	16.1	19.2	35.3	11.5	9.8	21.3
기타+1세대	3.5	4.0	7.5	32.5	16.8	49.3	14.0	10.4	24.4
기타+2세대	1.9	2.0	3.9	12.5	17.6	30.2	10.6	9.8	20.4
기타+3-4세대	5.6	4.4	10.0	20.4	24.5	44.9	5.7	18.5	24.2

주: 1) 사적이전의 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는 일차소득기준 지니계수(혹은 빈곤율) 대비 시장소득 지니계수(혹은 빈곤율)의 감소율을 의미함.

2) 공적이전의 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는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혹은 빈곤율) 대비 경상소득 지니계수(혹은 빈곤율)의 감소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25.2%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모자가구에서는 사적이전이 상대적 빈곤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공적이전은 상대빈곤을 69.0%p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자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이전 전과 이전 후의 상대 빈곤율을 절반 이상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공·사이전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비교했을 때, 공적이전소득에서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 가구에서는 공적이전의 절대빈곤 감소 효과가 25.8%p로 노인이나 모자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2세대 가구의 공적이전의 효과는 31.4%p로 가장 높았다. 맞벌이가구의 세대구성의 효과를 살펴보면 1세대, 즉 맞벌이부부 세대의 사적이전의 효과는 16.8%p로 공적이전에 비해 매우 높았다. 그러나 2세대 구성된 맞벌이가구는 사적이전의 효과가 4.8%p로 크게 감소하고 공적이전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으로 구성된 맞벌이가구는 사적이전이 절대빈곤 감소 효과가 19.6%p 나타나는 반면, 공적이전의 효과는 2.5%p로 매우 미약하다. 이는 1세대만 구성된 맞벌이부부는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으로 부터의 사적인 지원이, 3세대로 구성된 확대가족의 경우는 동거하고 있는 가족

의 사적 지원이 크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앞선 분석에서 1세대와 3세대 가구에서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이 동시에 높은 결과를 보여 세대간의 동거가 빈곤의 지표로 인식될 수 있었지만, 세대의 구성이 사적이전의 재분배 및 빈곤완화 기

<표 7> 전국가구(2인 이상)의 가구특성별 재분배 및 빈곤감소 효과 비교(2008년 기준)

(단위: %p)

		재분배 효과			절대빈곤 감소 효과			상대빈곤 감소 효과		
		사적 이전	공적 이전	총효과	사적 이전	공적 이전	총효과	사적 이전	공적 이전	총효과
근로자 가구	노인가구	8.3	2.1	10.4	19.9	14.8	34.7	35.7	-0.1	35.6
	노인+1세대	6.9	1.3	8.1	19.9	14.2	34.1	30.6	-2.6	28.0
	노인+2세대	-1.6	12.4	10.8	19.8	16.4	36.3	38.8	-6.1	32.7
	모자가구	0.2	9.1	9.3	49.2	21.9	71.1	37.0	1.6	38.6
	맞벌이가구	0.8	1.9	2.7	8.1	24.7	32.8	12.4	5.2	17.6
	맞벌이+1세대	1.3	2.2	3.5	14.6	4.5	19.1	11.2	-1.0	10.2
	맞벌이+2세대	0.7	1.9	2.6	4.9	30.1	35.0	13.0	4.6	17.6
	맞벌이+3-4세대	1.2	2.3	3.6	21.4	7.0	28.4	8.4	3.1	11.5
	기타가구	2.5	2.9	5.4	15.2	18.4	33.6	12.9	1.1	14.0
	기타+1세대	4.0	4.0	8.1	25.6	13.0	38.6	6.4	1.1	7.5
	기타+2세대	1.7	2.3	4.1	12.5	16.0	28.5	8.1	2.3	10.4
	기타+3-4세대	5.1	5.3	10.3	17.3	27.9	45.2	25.4	2.0	27.4
근로자 외 가구	노인가구	29.0	15.9	44.9	18.2	21.5	39.7			
	노인+1세대	26.7	15.5	42.1	16.7	21.9	38.6	32.0	22.5	54.5
	노인+2세대	41.5	21.7	63.1	26.4	19.2	45.6			
	모자가구	53.1	4.0	57.1	75.4	4.9	80.3			
	맞벌이가구	0.7	1.6	2.3	9.7	14.8	24.5	4.4	7.6	12.0
	맞벌이+1세대	0.4	1.9	2.2	39.4	25.8	65.2	11.0	10.8	21.8
	맞벌이+2세대	0.9	1.5	2.4	9.9	16.4	26.3	6.1	10.6	16.7
	맞벌이+3-4세대	0.4	2.3	2.7	0.0	0.0	0.0	6.2	1.5	7.7
	기타가구	8.1	8.4	16.6	16.3	18.9	35.2	12.1	14.5	26.6
	기타+1세대	14.8	13.7	28.6	19.9	25.4	45.3	21.3	11.6	32.9
	기타+2세대	6.3	6.3	12.6	14.5	17.7	32.2	11.6	12.6	24.3
	기타+3-4세대	9.7	11.0	20.7	18.2	15.9	34.2	15.1	15.0	30.0

주: 1) 사적이전의 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는 일차소득기준 지니계수(혹은 빈곤율) 대비 시장소득 지니계수(혹은 빈곤율)의 감소율을 의미함.

2) 공적이전의 불평등 및 빈곤감소 효과는 시장소득기준 지니계수(혹은 빈곤율) 대비 경상소득 지니계수(혹은 빈곤율)의 감소율을 의미함.

3) 근로자외 가구의 일부 가구유형에는 일차소득기준 상대적 빈곤율이 0%를 기록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 경우 재분배 및 빈곤감소 효과 수치를 제시하지 못함.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능을 상당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대의 지표로도 동시에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7>은 전국가구를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특성별 재분배 및 빈곤감소 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 가구 모두에서 공적이전보다 사적이전의 재분배 및 빈곤감소 효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대빈곤의 경우는 사적이전의 감소 효과가 35.7%p로 나타나는데 비해 공적이전은 오히려 상대빈곤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모자가구의 경우는 근로자가구에서 공적이전이 사적이전보다 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절대빈곤이나 상대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는 여전히 사적이전의 효과가 큰 것이 확인된다. 근로자외 가구에서는 사적이전의 재분배 효과가 53.1%p로 나타나 사적이전 전과 후의 지니계수가 절반 이상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그 효과가 매우 큰 반면, 공적이전은 재분배 효과는 4.0%p로 매우 낮다. 또한 전국가구에서도 세대간 동거가 가족간 경제적 지원과 세대간 연대의 역할을 한다는 점도 동시에 확인된다.

#### IV. 맺음말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사정 악화는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 감소와 분배지표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소득의 불균등한 분배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었고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고용의 위기가 시사하는 바는 남다르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인 고용정책은 물론 노동시장을 통한 소득의 불균등과 그로 파생된 빈곤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함께 해야 할 시점인 듯하다.

이 글은 소득불평등도와 빈곤위험에 노출된 계층이 누구이며, 정부의 재분배정책이 가장 미약한 집단이 누구인지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개인과 가구의 특성을 고용·가족구성·세대구성이라는 세 차원을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차원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정도는 대략적으로 가구주의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취업하지 않은 가구, 노인과 모자로 구성된 가구, 1세대 가구에서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고용과 가족구성의 차원을 결합해 보면 가족구성이 동일하더라도 가구주의 고용상태에 따라 소득불평등과 빈곤정도가 매우 이질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히 빈곤 위험에의 노출이 심한 가구가 노인가구와 모

자가구로 나타나 빈곤의 여성화 및 노인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가구의 특성별로 재분배 및 빈곤완화 효과에 있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적 이전소득의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공적이전소득의 효과가 크게 일어나야 할 가족유형에서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KLI**

<참고문헌>

- 노동부(2009), 『2009년도 1/4분기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박경숙(2003), 「세대관계의 다양성과 구조」, 『한국사회학』 37(2), 한국사회학회, pp.61 ~ 94.
- 반정호(2008), 「최근 소득분배 현황과 조세 및 공적이전의 재분배효과: 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노동리뷰』 42,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2009), 『2008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 Brown, Theodore(1988),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in Kyoto, Japan,”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3, pp.349 ~ 360.
- Bumpass, Larry(1990), “A Comparative Analysis of Coresidence and Contact with Parent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National Survey of Families and Households Paper 41.
- Litwak, Eugene(1985), *Helping the Elderly: The Complementary Roles of Informal Networks and Formall System*, New York: Guilford Press.
- Palmore, Erdman(1975), “The Status and Integration of the Aged in Japanese Society,” *Journal of Gerontology* 30, pp.199 ~ 208.
- Parsons, Talcott and Robert Bales(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Illinois: The Free Press.
- Shanas, Ethel(1980), “Older People and their Families: The New Pione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pp.9 ~ 15.

<부표 1> 가구특성별 절대빈곤율 추이 : 복합차원(2003~08년)

빈곤율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도 시 근 로 자 가 구	사무직	노인가구	0.0	11.9	6.8	9.2	2.1	6.8
		모자가구	3.2	2.7	7.1	4.7	12.2	9.2
		맞벌이가구	1.3	1.1	0.9	1.0	0.5	0.5
		기타가구	2.3	2.9	2.5	2.4	2.7	2.5
	상용노무직	노인가구	8.8	1.4	31.0	54.2	30.2	29.2
		모자가구	15.3	21.1	17.8	27.7	22.1	26.4
		맞벌이가구	1.7	1.0	2.7	2.0	2.1	1.7
		기타가구	6.2	4.9	9.3	8.9	7.4	7.6
	임시일용직	노인가구	54.5	40.3	65.2	42.6	49.8	61.4
		모자가구	27.2	21.2	48.9	39.1	34.7	54.9
		맞벌이가구	4.6	5.1	7.3	8.3	7.0	7.5
		기타가구	20.1	18.7	24.0	21.8	22.1	25.3
전 국 가 구	사무직	노인가구	0.0	10.3	6.4	9.2	2.0	8.0
		모자가구	3.1	2.9	7.2	6.3	12.3	9.1
		맞벌이가구	1.2	1.0	0.9	0.9	0.5	0.4
		기타가구	2.7	2.8	2.6	2.5	2.7	2.4
	상용노무직	노인가구	7.9	6.6	26.4	47.5	29.6	32.4
		모자가구	15.8	20.7	25.8	32.2	21.9	24.9
		맞벌이가구	2.0	1.1	2.7	1.9	2.2	1.7
		기타가구	6.9	5.1	9.7	9.1	7.2	8.7
	임시일용직	노인가구	53.2	46.2	63.1	52.0	56.6	68.3
		모자가구	29.8	24.2	49.0	41.3	33.3	39.3
		맞벌이가구	5.0	5.6	8.1	8.9	7.4	7.5
		기타가구	21.8	20.8	25.6	23.1	23.7	28.1
	근로자외 가구	노인가구	72.6	67.2	64.4	66.2	70.1	70.8
		모자가구	20.4	20.3	20.8	19.2	20.1	18.8
		맞벌이가구	1.6	2.7	3.8	3.1	3.3	2.7
		기타가구	19.7	19.9	21.6	22.6	22.0	23.3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부표 2> 가구특성별 상대빈곤율 추이 : 복합차원(2003~08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도 시 근 로 자 가 구	사무직	노인가구	0.0	22.1	6.8	10.3	2.1	12.9
		모자가구	9.0	16.0	23.0	14.8	19.4	12.4
		맞벌이가구	6.1	6.8	5.7	5.0	4.8	4.5
		기타가구	6.3	8.2	6.8	7.6	7.1	7.1
	상용노무직	노인가구	4.3	0.0	8.0	0.9	2.0	12.3
		모자가구	8.5	11.3	10.9	6.8	13.7	13.1
		맞벌이가구	4.9	3.3	6.8	6.0	6.3	5.1
		기타가구	8.3	8.8	11.8	11.5	10.6	10.4
	임시일용직	노인가구	25.5	18.6	5.5	7.3	9.7	7.4
		모자가구	12.6	11.4	10.2	15.2	12.7	15.9
		맞벌이가구	8.7	8.0	8.4	9.6	8.6	8.9
		기타가구	15.7	15.2	18.0	16.2	14.2	16.8
전 국 가 구	사무직	노인가구	0.0	19.1	6.4	10.3	2.0	17.3
		모자가구	10.2	15.3	22.8	16.4	18.0	15.2
		맞벌이가구	6.7	6.9	5.4	5.0	4.6	4.9
		기타가구	7.0	8.4	7.3	7.4	7.1	7.1
	상용노무직	노인가구	3.8	5.3	7.7	2.2	5.1	14.6
		모자가구	8.2	8.8	7.8	8.2	14.6	13.1
		맞벌이가구	5.0	3.7	6.6	5.8	6.2	5.0
		기타가구	8.3	8.6	11.7	11.4	10.1	10.8
	임시일용직	노인가구	30.3	21.0	11.1	17.2	11.7	19.5
		모자가구	12.0	11.9	13.2	19.8	14.9	22.9
		맞벌이가구	9.3	8.4	9.6	10.6	9.2	9.0
		기타가구	16.1	16.3	18.3	17.0	15.5	17.4
	근로자외 가구	노인가구	34.7	34.0	32.4	31.5	32.0	32.7
		모자가구	24.0	21.5	22.6	20.1	19.9	19.0
		맞벌이가구	6.2	7.9	8.7	7.8	9.0	7.3
		기타가구	19.6	21.0	21.9	22.9	22.5	22.7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원자료.